투자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ING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ING 1억만들기증권투자신탁1호(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 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ING 1억만들기증권투자신탁1호 (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ING 1억만들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ING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ingim.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2011년 4월 24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1년 4월 29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3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홈페이지 참고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중권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효력발생일 이후 (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salad97@shinhan.com

bestofbest@shinhan.com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 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 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 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 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 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 호를 받지 못합니다.

목차

I 집합·	투자기구의 개요	5
1.	명 칭	5
2.	모집 예정기간	5
3.	모집 예정금액	5
4.	펀드 존속기간	5
5.	분류	5
6.	집합투자업자	5
Ⅱ집합	투자기구의 투자정보	5
1.	주요 투자대상	5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6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7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8
6.	운용전문인력	9
7.	투자실적 추이(세전기준)	9
Ⅲ매입	, 환매관련 정보	11
1.	수수료 및 보수	11
2.	분배금	12
3.	과 세	13
4.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환매 절차	13
Ⅳ요약	재무제표	15

예비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 칭

0 0	_, _									
명 칭		ING 1억만들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협회코드 27763)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e	종류 C-i	종류 C-d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27764	35822	94568	94569	94570	94579	27766	27767	27768	

2. 모집 예정기간

추가형으로서 모집개시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3. 모집 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3조좌까지 모집(판매)이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판매)합니다.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펀드 존속기간

-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 신탁계약기간은 개별투자자의 저축기간 혹은 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분류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 다. 개방형 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 · 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정식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집합투자업자

- 회사의 개요

러시의 계표	
회 사 명	ING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84 서울파이낸스빌딩6층 (대표전화 : 02-3703-98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 내용
1	주 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 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

			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함
2	어 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3	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4	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서조항참조)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다만, 법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가능
⑤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6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투자제한 참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 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7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 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및 금융기 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로 운용할 수 있음
8	기타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①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시기별/지수대별 분산투자가 이루어지는 적립식 상품의 성격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투자관점에서 투자합니다.

종목분석에 입각한 Bottom UP approach (상향식방식)을 기본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Top Down(하향식방식)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②종목선택 전략

수익 및 가치 모델을 활용한 정성적/정량적 분석 및 기업방문, 외부 애널리스트 초청 세미나 등 지속적 인 리서치 활동을 통해 종목을 발굴합니다.

시장상황 또는 특정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된 우량주를 편입합니다.

시장 및 업종대비 상대적으로 우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종목은 전략적으로 편입합니다.

③ 비교지수(벤치마크): KOSPI

비교지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 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위험관리

①투자 유니버스 관리

당사의 기준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만 유니버스에 편입될 수 있으며, 특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니버스 이외의 종목은 투자하지 못합니다.

②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

투자대상자산을 법과 규정 등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중 투자하지 않고 분산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축소합니다.

③신용평가관리

당사의 기준 및 규약에서 정한 투자대상 및 신용등급 이상의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합니다.

(4)적극적인 매매전략

이 투자신탁은 시장상황에 따른 신속하고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므로 빈번한 매매로 인하여 매매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매매비용의 증가는 투자신탁의 비용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수익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 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u>/「. 현인지점</u>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관련법령은 이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아니합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신탁재산을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증권등의 가격 변동, 이자율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 및 어음의 가격은 이자율등 여타 거시경제지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및 어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 및 어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위 험	일반적으로 장외시장의 거래는 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에 비하여 정부의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정산이행보증과 같이 장내거래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들이 장외거래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투자에 투자 시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 투자자금전액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등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훨씬 큰 신용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외시장은 통상 유동성이 부족하므로 원하는 시 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종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부도 등의 위험	주식, 채권 및 어음 등의 경우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자금의 회수가 불가능 할 수도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발행한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자산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ING자산운용은 투자목적, 투자전략 등을 고려해 투자신탁을 아래와 같이 다섯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험등급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비고
1등급	매우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저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최저 10% 이상 투자하는 집 합투자기구 (최대 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 이상 인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고위험자산에 최저 40% 초과, 최고 60% 이하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최대 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대 40% 이하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최저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며 중위험자산에 최저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 저위험자산에 최저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증권투자신탁으로 위험등급 기준이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지만 위험 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는 투자자에 적합합니다. 위험등급 및 투자자유형은 ING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의 투자목적, 위험선호도 등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ING자산운용㈜ 기준에 따른 상품위험등급분류 기준입니다. 이와 달리, 판매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0조에 의한 판매회사별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권요시 상품위험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판매회사의 상품위험등급은 판매회사 직원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운용정문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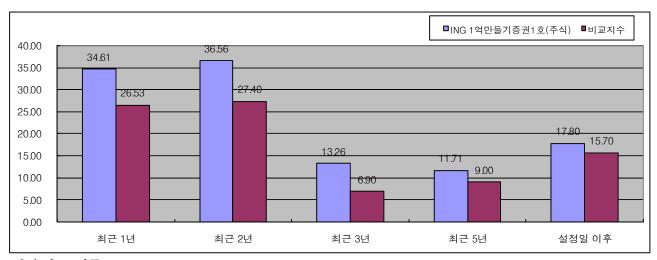
٠. ك					
	출생		순 (} 현황	
성명	년도	직위	운용중인	운용중인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ゼエ		다른 펀드수	다른 자산 규모	
					현 ING 자산운용 주식액티브팀장
박형렬	1968	팀장	Q	2,170	칸서스자산운용 주식운용팀장
극 경 될	1900	日 3	0	2,170	KTB자산운용 리서치, 주식운용팀장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 추이(세전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연평균수익률



*운용펀드 기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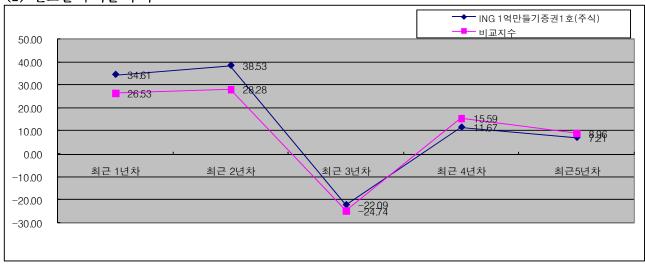
	최근 1 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기간	10.04.25	09.04.25	08.04.25	06.04.25	03.01.03
	~11.04.24	~11.04.24	~11.04.24	~11.04.24	~11.04.24
ING	34.61	36.56	13.26	11.71	17.80
1 억만들기증권 1 호(주식)	34.01	30.30	13.20	11.71	17.00
비교지수	26.53	27.40	6.90	9.00	15.70
종류 A					40.30
비교지수					34.80
종류 C1	32.84	35.66	12.76	11.41	17.61
비교지수	30.28	29.28	7.94	9.63	16.11
종류 C-e					41.08

비교지수			34.80
종류 C2			-67.80
비교지수			-67.66
종류 C3			29.67
비교지수			-61.22
종류 C4			24.59
비교지수			-61.22
종류 C5			24.46
비교지수			-61.22

주 1) 비교지수 : (1 * [KOSPI])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연도별 수익률 추이



*운용펀드 기준

(단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 년차
기간	10.04.25	09.04.25	08.04.25	07.04.25	06.04.25
	~11.04.24	~10.04.24	~09.04.24	~08.04.24	~07.04.24
ING 1 억만들기증권 1 호(주식)	34.61	38.53	-22.09	11.67	7.21
비교지수	26.53	28.28	-24.74	15.59	8.96
종류 A	40.30				
비교지수	34.80				
종류 C1	32.84	38.53	-22.09	11.67	7.21
비교지수	30.28	28.28	-24.74	15.59	8.96
종류 C-e	41.08				
비교지수	34.80				
종류 C2					

비교지수			
종류 C3	301.47		
비교지수	15.84		
종류 C4	285.74		
비교지수	15.84		
종류 C5	285.34		
비교지수	15.84		

- 주 1) 비교지수 : (1 * [KOSPI])
 -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3) 마지막 수익률 즉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 (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 익률'을 말합니다.

Ⅲ 매입, 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구분	종류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e	종류 C-i	종류 C-d	지급시기
선취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1.0%이내		없음						매입시	
환매 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위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위범위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1: 1 1 1 1	12 - 7	\ 							
		지급비율 (순자산총액의 %, 연)							지	
구분	종류A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종류 C-e	종류 C-i	종류 C-d	급 시 기
선취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1% 이내	없음								매 입 시
환매 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환 매 시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집합투자 업자보수	0.625	0.625	0.625	0.625	0.625	0.625	0.625	0.625	0.625	
판매회사 보수	0.900	1.500	1.375	1.250	1.125	1.000	0.900	0.050	0.060	매
신탁업자 보수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 3개 월
일반사무 관리보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기타비용	0.0012	0.0039	0.0028	0.0035	0.0036	0.0036	0.0013	0.0039	0.0039	-
총보수 및 비용	1.5662	2.1689	2.0428	1.9185	1.7936	1.6686	1.5663	0.7189	0.7289	_
증권 거래비용	0.9333	0.8183	0.9028	0.8734	0.8674	0.8607	0.9249	0.8183	0.8183	-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 치로 사용하며, 미설정 된 클래스의 경우에는 종류C1의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0.01.03 ~ 2011.01.02]
 -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미설정 된 클래스의 경우에는 종류 C1의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0.01.03 ~ 2011.01.02]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투자기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A수익증권	214	560	929	1,966
종류C1수익증권	227	660	1,062	2,145
종류C-e수익증권	164	510	897	1,916
종류C-i수익증권	75	236	410	916
종류C-d수익증권	76	239	416	928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종류A수익증권과 종류C1수익증권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2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분배금

집합투자업자는 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종류C-d 수익증권에 한하여 매1년 단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현금(이하 "분배금"이라 한다)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1. 분배금: 분배 전 순자산가치의 10% 이내에서 회사에서 정하는 금액
- 2. 분배금 지급일: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
- 3. 이익금이 분배금보다 적은 경우 분배금을 먼저 지급하고, 차액은 좌수를 환매 청구한 것으로 보아 분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분배금 지급일 제 3영엽일 전일에 분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매청구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 수익자가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위의 규정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3. 과 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 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장기주식형 펀드의 세제지워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 3년 이상 적립식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장기투자를 하더라도 가입 후 3년 이내에 투자자가 지정한 목표금액을 달 성하여 자동환매되는 경우에는 적립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됨을 유념하시 기 바랍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증권 신고서 및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환매 절차

(1) 기준가격 산정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 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 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 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ingim.c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종류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매입 및 환매 절차

-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 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합니다.

-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1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나)1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다)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환매 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가)1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나)1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다)환매대금은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		H 1 1 1
구 분	지	비고	
종류	종류A	종류 A를 제외한 기타 수익증권	(지급시기)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환매시

주1) 환매수수료는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으로 징수합니다.

수익자는 적립식인 경우 목표금액을 지정할 수 있으며, 평가금액(기준가격x수익증권좌수)이 목표금액 이상인 경우 환매를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액적립식인 경우 평가금액이 목표금액에서 최종납입액을 차감한 금액 이상인 경우 환매를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주)판매회사의 사정에 따라 목표금액 지정방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²⁾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V 요약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제 9기	제 8기	제 7기				
항 목	(2011.01.02)	(2010.01.02)	(2009.01.02)				
운용자산	107,058,063,955	250,921,889,313	221,864,885,050				
증권	105,709,467,750	250,903,987,037	204,379,314,69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348,596,205	17,902,276	17,485,570,36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3,961,808,758	8,578,090,333	7,490,940,899				
자산총계	111,019,872,713	259,499,979,646	229,355,825,949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3,493,230,899	6,656,942,040	6,305,291,751				
부채총계	3,493,230,899	6,656,942,040	6,305,291,751				
원본	91,340,141,408	264,574,183,215	385,429,042,748				
수익조정금	-12,300,208,385	-33,887,647,680	-1,926,340,799				
이익잉여금	28,486,708,791	22,156,502,071	-160,452,167,751				
자본총계	107,526,641,814	252,843,037,606	223,050,534,198				
	손	익계산서					
 항 목	제 9기	제 8기	제 7 기				
о ¬	(2010.01.03 - 2011.01.02)	(2009.01.03 - 2010.01.02)	(2008.01.03 - 2009.01.02)				
운용수익	34,710,743,817	140,317,548,556	-152,396,247,116				
이자수익	69,896,372	128,007,597	1,025,507,403				
배당수익	1,502,049,490	1,851,075,048	4,507,369,496				
매매/평가차익(손)	33,138,797,955	138,338,465,911	-157,929,124,015				
기타수익	32,304,702	107,636,510	237,292,761				

운용비용	2,137,777,701	6,586,302,073	8,008,477,913
관련회사 보수	2,103,179,061	6,408,836,763	7,881,515,963
매매수수료	34,598,640	177,465,310	126,961,950
기타비용	4,118,562,027	111,682,380,922	284,735,483
당기순이익	28,486,708,791	22,156,502,071	-160,452,167,751
매매회전율	459.66	393.01	247.79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